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뻐했던 10일간의 여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 활동의 기록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단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09.30. _ Vol.423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
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신장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
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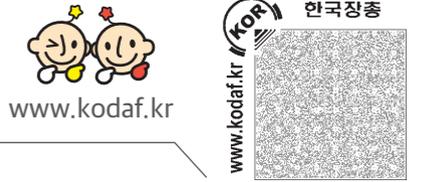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뻐던 10일간의 여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 활동의 기록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소영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제25조(e)유보를 철회하라”

2014년 한국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의 외침이 제네바를 가득 매운 후 8년만이다. 2022년 8월 24일과 25일, 한국 정부에 대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도 제네바로 향했다. 시민사회는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 의 대응 장애계 연대(이하 장애계연대)’라는 이름으로 ‘원팀’이 되어, 유엔에 한국 장애인 권리의 현실을 알렸다.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과 정부의 입장, 장애계연대의 대응을 생생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0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꼭 짚어 이해하기

■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커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협약)은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임
- 세계인구 70억명 중 12~15%가 장애인이며, 세계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세계빈민의 20%가 장애인임. 장애인의 8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으로, 교육, 고용, 주거, 교통, 건강/의료서비스, 여가 등의 기회 상실, 경제적 배제를 경험함¹
-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게 되었으며, 2001년 멕시코 빈센트팍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2년부터 8차례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06년 채택되었음²

■ 장애,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국제적 문서로 그 의미가 매우 큼. 협약을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종래에 장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의료적 손상에 집중한 의료적 모델이었음. 협약은 장애를 사회적/권리적 관점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음
- 또한 장애인의 실제적인 권리를 모두 명문화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정책과 제도가 장애인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보장·증진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졌어야 하는 조치라는 점과 이러한 조치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음



CRPD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배너
출처: OHCHR CRPD 웹사이트

■ 협약은 정부가 지켜야 하는 국제법

-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하였음. 1개월 뒤인 2009년 1월에 협약이 한국에서 발효됨.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협약의 본문 조항들은 ‘당사국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협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당사국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제33조(국내이행 및 감독)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정부 부처 중 한 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협약 이행의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 증진할 의무가 있음

■ 협약 비준 후 협약 이행 사항 유엔 보고 의무 발생

- 협약 제35조(당사국 보고서)와 제36조(보고서의 검토)는 협약의 작동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당사국은 협약 발효 이후 2년 안에 유엔에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함. 이후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를

¹ 김형식.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고양:어가.
² 안경환.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서울:한학문화.



준비할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협약 심의 과정은 다음의 문서/절차에 따름

문서/절차 이름	내용
국가보고서 State party report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³ (이하 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보고서. 발효 후 최초 2년 이내, 이후 4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쟁점목록 List of issues	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 추가 정보,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 목록. '건설적인 대화'를 앞두고 위원회에서 정부에 전달함
건설적인 대화 Constructive Dialogue	정부와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만나 협약 이행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나눔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보고서와 심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가 정부에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전달함



대한민국은 제2·3차 보고서 심의와 UN의 최종견해 발표까지 완료

- 대한민국은 2009년 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2011년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쟁점목록 과정을 거쳐 2014년 1차 심의가 제네바에서 진행돼, 1차 최종견해를 받음
- 이후 2018년에 위원회에서 다음 보고를 위한 쟁점목록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2019년 이에 대해 정부가 제2·3차 병합국가보고서로 답변을 제출함. 코로나19로 절차가 지연되어 2022년에 현장에서 심의가 진행되었고, 제2·3차 최종견해가 9월 9일 발표되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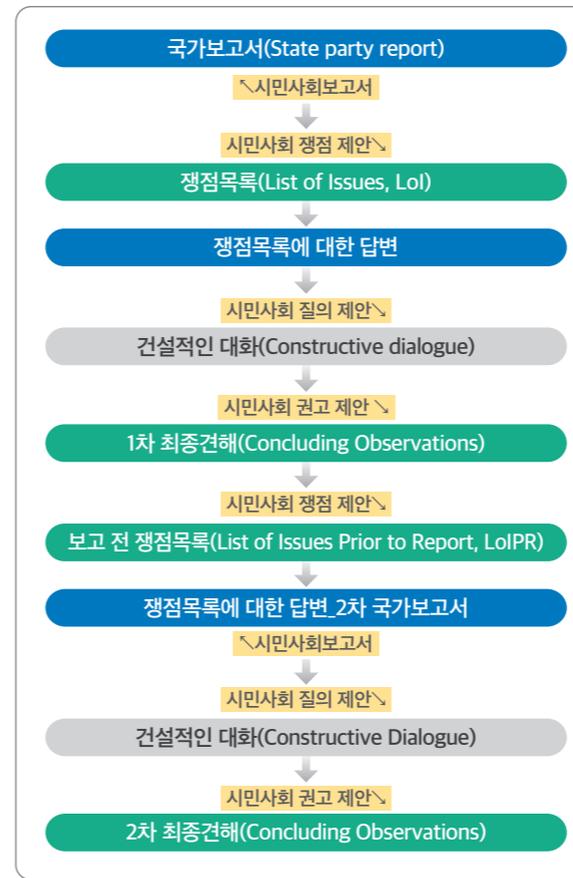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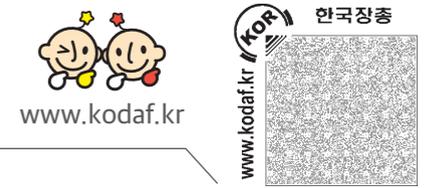
02 미션 파서블! '정부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현장에 가다

대한민국은 2014년 1차 심의 이후 2022년 8월 24일, 25일 제2·3차 심의를 갖게 되었음.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심의하는 동안 국내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 장애계도 '원팀'으로 연대하였음. 일사 분란했던 열흘간의 연대 활동을 흐름에 맞춰 소개함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하라!"

-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핵심적임. 당사국이 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보고할 때, 스스로의 이행사항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성과를 확대, 포장 할 수 있음. 또 간혹 협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반이 되어있지 않기도 함. 이에 시민사회는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함

³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별과 지역, 문화 등의 균형을 갖는 18명의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점검 및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함
⁴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t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f\)C%2fKOR%2fCO%2f2-3&Lang=en](https://t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f)C%2fKOR%2fCO%2f2-3&Lang=en)
⁵ 절차대로라면 2015년에 제2차 보고서 제출이 진행되었어야하나 위원회의 업무 적체로 제2·3차를 병합하여 진행하게 됨



- 시민사회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민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발표하기 전에 쟁점목록의 내용도 제안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심의 질문이나 최종견해에 담길 권고도 제안할 수 있음. 이는 모두 통계자료나 사례 등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Mission1 현지 파견 전, 국가보고관에게 국내 상황 상세히 알리기!

- 민간보고서는 심의 3주 전까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분량은 10,700단어 이하로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 상에 포장된 여러 법과 정책,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체감도 등을 짚어내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도 함
- 제2·3차 심의에 함께 대응한 장애계연대에서는 한국장총 등 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NGO연대와 KDF, 장애인법연구회 등의 단위에서 총 10개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민간보고서는 초안이 작성 되는대로 번역하여 국가보고관⁶에게 전달하고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받음. 국가보고관은 장애계연대와의 미팅에서 주요 정책별 배정된 예산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과, 장애여성 정책이 여성정책에 주류화되어 있는지 여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여 민간보고서에 보완하였음

COUNTRY
Republic of Korea Wednesday 24 Aug 2022 PM, Wednesday 24 Aug 2022 PM, Wednesday 24 Aug 2022 PM, W
Document type
<input type="checkbox"/>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input type="checkbox"/> State party report under LoIPR
<input type="checkbox"/> (Common) Core Document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LOIPR)
<input type="checkbox"/> List of delegation/participants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NHRIs (for the session)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NHRIs (for LOIPR)
<input type="checkbox"/> Open/Closing Remarks
<input type="checkbox"/> Additional info from State party
<input type="checkbox"/> Concluding observations

한국 심의를 앞두고 아카이빙 되어있는 관련 문서 출처: OHCHR CRPD 웹사이트

Mission2 현지 파견 후, 위원별 관심사를 파악하고, 직접 소통하기!

- 심의는 정부와 위원회간의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됨.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심의 시간 중에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없음. 그래서 심의 이틀 전 시민사회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프라이빗 브리핑' 시간이 주어짐

⁶ 국가마다 2명 내외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국가보고관으로 지정되며, 보고관은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 과정을 주도하므로 시민사회는 국가보고관이 국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함. 대한민국의 경우 몽골과 가나의 시각장애인 여성 위원 2명이 국가보고관으로 지정되었음



프라이빗 브리핑이 이뤄진 UN 회의장 룸19 / 필자 현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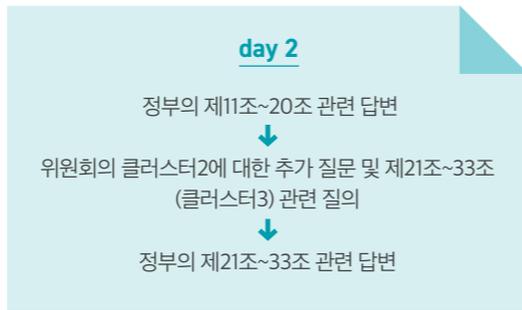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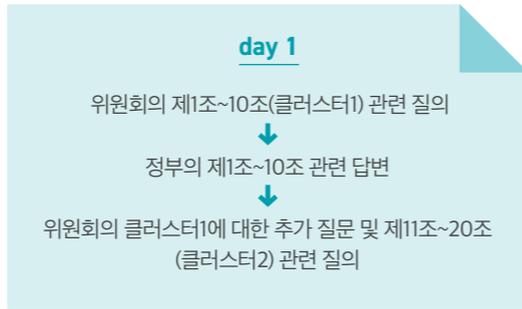
- 프라이빗 브리핑은 90분 동안 진행됨. 시민사회의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 위원회의 질문이 이어지고, 시민사회가 응답하면 마무리 됨. 장애계 연대는 여러 차례 리허설을 통해 발언 시간을 최소화하였음. 대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문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음. 현장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였음
- 프라이빗 브리핑 이후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 위원과 접촉하였고, 각자 담당한 이슈를 전달하였음. 위원회의 관심 이슈는 이전 심의에서의 질문 내용을 모니터하거나, 프라이빗 브리핑 시 질문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이스라엘 출신의 오델리아 피투시 위원에게 장애아동 이슈를 전하는 필자의 모습 / 장애계연대 현지 촬영

Mission3 심의 중, 위원회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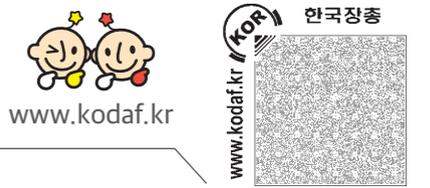
- 심의는 이틀에 나눠서 진행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심의 전, 조항별 질문과 질문이 필요한 근거를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관심 있는 위원들에게 전달함
- 심의 중,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함. 한국어는 통역을 참고하였으며, 영문은 유엔에서 제공하는 속기를 활용함. 간혹 통역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문 자막과 한국어 통역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함
- 쉬는 시간에는 제안한 질문 중 누락되었으나 꼭 필요한 질문을 위원회에게 다시 전달하였음. 또한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속기록에 의견을 달아 반박자료를 준비함



심의 후 UN 카페테리아에 모여 반박 자료를 만들고있는 장애계연대 / 필자 현지 촬영



Mission4 심의 후, 정부 답변 반박과 최종견해 제안하기!

- 심의 후에는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전달하였음. 또한 최종 견해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을 우려사항과 함께 정리하여 제안함
- 최종견해는 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일자에 맞춰 발표되므로 심의 직후에 작업을 완료해야 함

Mission5 귀국 후, 최종견해를 분석하고 정부의 이행 끝까지 모니터하기!

- 최종견해는 모든 심의 일정이 마무리 되는 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됨. 시민사회에서는 최종견해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정부의 이행을 모니터 해야 함



유엔제네바 사무소 전경 / 필자 현지 촬영



유엔제네바 사무소 앞 광장과 브로크너 / 필자 현지 촬영

0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의 현장 라이브!

유엔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 장애정책 심의. 위원회와 정부가 주고받은 조항별 질의와 답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생생히 정리함

Cluster 1: 제1조~10조

의료적 관점 만연한 국내 장애정책 (제1~4조)

- 위원회 주요 질의**
 - : 한국의 법령과 제도, 특히 장애등록제와 장애등급제가 의료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이 우려스러움. 이를 CRPD와 부합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개별화 지원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응답 바람

- 정부 주요 답변**
 - : 2019년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도입하여 기존의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권리적모델의 장애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권리적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황임

- 최종견해**
 - : 6(a). 장애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개념을 채택할 것, (b). 인권적 모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판정제도를 다시 설정할 것

-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려했던 내용은 의료적 모델의 장애개념이었음. 우리나라는 제1차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의료적개념을 폐지하고 사회적/권리적개념을 도입하도록 권고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여전히 '장애'를 개인이 지닌 신체나 정신의 의료적 손상 그 자체로 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명명하고 있음. 장애등록제, 개편된 장애등급제 역시



의료적 개념에 입각함. 의료적 개념에 따라 제한적으로 장애를 인정하다보니, 시청각장애인 혹은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등급제 개편은 기존의 6개 등급을, 2개 정도로 나눴을 뿐이며, 서비스 종합조사표는 문항 중 10%정도만 사회적 환경을 다루고 있어, CRPD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단순한 '참석' 아닌 의미있는 '참여' (제4.3조, 제7.3조, 제33조 등)

위원회 주요 질의

: 대한민국이 장애인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특히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의 기능, 개최 횟수, 구성이 어떠한가? 또한 장애아동, 장애여성,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등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정부 주요 답변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단체 참여하고 있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는 정책 이행과 감독,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위원 15인 중 1/2을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아동참여 위원회에 장애아동 10%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최종견해

: 10.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성소수자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 할 것
: 16(a).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

-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 보장'은 협약 전문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2018년 장애인 참여를 규정하는 일반논평 제7호를 발표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심의 중에도 장애인단체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음. 정부가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에 장애인단체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정작 결정사항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진행 전에 부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완료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둔 후 회의를 시작했다는 여러 사례가 위원회에 전달 되었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매년 0-3회 개최하는 것에서 그치며, 그 분과 위원회 개최 횟수는 더욱 저조하여 그 기능과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답변함. 아동 참여권은 아동분야에서 활성화되어있는 의제임. 문제는 그 속에 비장애아동들만이 아닌 장애아동도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장애아동을 10~15% 배정하도록 규정 한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 했지만, 사실상 장애아동, 탈북민 등 소수 아동 모두를 포함한 비율이었고, 운영규정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부족함. 이러한 장애아동 등의 의사결정과정 배제는 정책 수립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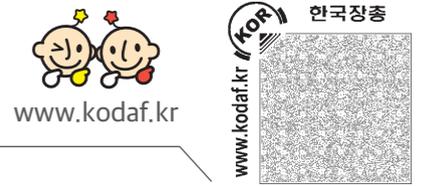
교차차별 다루는 법 부재 (제5조~7조)

위원회 주요 질의

: 대한민국에 장애인이 성별, 젠더, 연령, 인종, 출신민족 등의 다양성에 따라 경험하는 다층적, 교차적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 주요 답변

: 2020년 이후 네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차별금지 사유, 구체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음. 다각적



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임

최종견해

: 12(a).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차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장애인권리협약은 제6조(장애여성)와 제7조(장애아동) 조항을 통해 장애와 여성, 장애와 아동 등 여러 차별 요인을 지닌 사람들이 다중, 교차차별에 놓여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장애여성과 아동 등이 경험하는 차별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지만, 그들을 교차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정책적 조치는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검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차별요인 배경을 지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가정에게 전가되는 장애아동 양육과 이로 인한 참사 (제10조)

위원회 주요 질의

: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함. 장애아동 가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 주요 답변

: 발달장애인 아동을 위해 예산을 2019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 양육가족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임. 잇따라 발생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체감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함

최종견해

: 21~22. 부모가 장애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를 우려하며, 장애인 가족의 자살을 막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장애아동의 가정이 양육 부담과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코로나19 등 공적 돌봄이 마비된 최근 그 빈도가 더욱 높아짐. 애초에 대한민국의 장애복지예산 정도는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예산 확대는 논할 거리가 아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해야 함. 결론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아님. 장애아양육가족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껏 해야 1일 2.6시간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장애아동 양육은 가정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생계활동, 심 나아가 삶을 포기하게 됨



심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전경. 스크린에 비친 스웨덴 출신 마커스 셰퍼 위원과 국제수어와 한국수어 / 필자 현지 촬영

Cluster 2: 제11조~20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속 장애포괄적 대응 절실 (제 11조)

위원회 주요 질문

: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률과 감염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 정부 주요 답변

: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수한 방역 국가로 손꼽힘. 장애포괄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늘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감염자를 위해 장애인 전담 병원을 운영하였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최종 견해

: 24(a). 모든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재난위험경감 계획을 채택할 것, (b). 재난위험경감계획,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 할 것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행동계획에 '장애인'은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에서 단 1회 언급되어 있음. 이는 장애포괄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볼 수 없음. 정부가 소개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정보 제공에서 배제되고, 코로나에 걸려도 수일간 자택에 방치되거나 시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 되었으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누락된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시정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들이었음. 미래사회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여러 문서와 사례들이 재난재해가 장애인, 특히 빈곤한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책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정부, 성년후견제 폐지 불수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제12조)

☞ 위원회 주요 질문

: 위원회는 약 1만 6천명이 후견제도의 피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우려함. 피후견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제약되며, 후견 개시 후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 궁극적으로 대체의사결정 관련법을 폐지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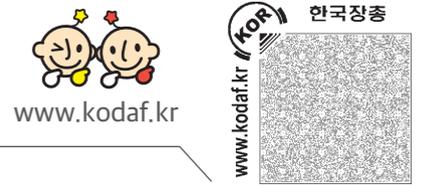
☞ 정부 주요 답변

: 후견제도는 확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조치임. 후견을 개시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으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후견 종료가능함.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한정후견제도의 경우 조력의사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 해외 국가들도 성년후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음

☞ 최종 견해

: 위원회는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진전과 계획이 없는 정부의 조치를 우려함. 28(a).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교체할 것, (b). 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c). 지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하고 배포할 것

- 정부는 1차 최종견해에 이은 2·3차 최종견해에서도 후견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음. 정부는 한정후견제도가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민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0년 기준, 가장 권리 제한의 정도가 큰 피성년후견인은 8,464건에 해당함. 반면



한정후견인은 829건, 특정후견은 937건에 불과함.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결혼, 이혼, 입양, 파양 등의 가족관계에 관한 결정권이 박탈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각종 직업을 갖는데 결격사유가 되고 있음

■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와 의사결정권 박탈하는 정부 (제14조, 15조)

☞ 위원회 주요 질문

: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비자의입원이 줄었다고 하였지만, 시민사회의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음.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절차보조제도와 심사에 따른 퇴원율은 0에 가까움, 이에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해주기 바람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환자가 피후견인인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기충격 등 비인격적인 의료처치가 가능함. 강제/격리, 물리적인 제재조치의 경우 협약에 위배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 정부 주요 보고 및 답변

: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자의입원 조건을 강화함. 이 결과로 자의입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입원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 경험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최종 견해

: 32.(a). 자타해 위험과 개인의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국내 법률을 폐지하고,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것, (b).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 강박 치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 제네바 현장에서 심리사회장애인의 문제를 열심히 알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소개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당사자가 입원할 때에 의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입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함. 현재 입원 당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제도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입원적합성심사는 대부분 서면으로만 이루어져 당사자의 상태와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상관없이, 전문의의 재량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격리강박은 남용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정신건강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우에 격리·강박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침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 때문에 시설물 훼손이나 퇴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격리 강박되는 사례가 정신병원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최종견해에 따라 반드시 조치가 필요함

■ 장애로 인한 강제 불임,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제17조)

☞ 위원회 주요 질문

: 강제 임신 중절 및 강제불임 현황, 모성보호 및 장애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 박탈 현황에 대해 보고바람

☞ 정부 주요 답변

: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대상 강제 불임 시술 및 강제 낙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향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강제불입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음. 위원회는 제1차 최종견해를 통해서 강제불입시술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여전히 같은 답만 반복하며, 실태조사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어, 잘못된 탈시설 정책 (제19조)

위원회 주요 질문

: 탈시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성인들이나 일부 장애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 주요 답변

: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21년 말 기준 공동 생활 가정 제외하고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은 약 24,000명, 매년 감소 중. 2021년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탈시설 로드맵 수립.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센터 운영, 3년간 시범사업 실시 중. 쾌적한 주거지원, 낮활동 취업 활동보조 등을 통해 사회통합서비스 마련해 나갈 예정. 장애인거주시설도 개인 생활 보장 될 수 있도록 소규모화 추진. 장애유형이나 특성 제한하지 않고 자립희망조사를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도 탈원화로드맵을 별도로 준비 중임

최종견해

: 42(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로드맵 검토,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제고 조치 이행할 것, (b). 장애아동, 성인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하고,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대할 것

- 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 뿐 아니라, 그룹홈, 보육원 등의 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곳에서의 탈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통계는 오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거주시설'에 한정 된 것이므로, 해당 통계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감소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또한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협약의 원칙이지만, 로드맵의 방향은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 하는 것임을 정부는 스스로 밝히고 있음.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협약 위반임.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간이 모두 지나도 시설은 유지됨. 민간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 유지 예산이 6,224억에 달하는 반면, 탈시설 예산은 21억에 그쳐, 정부의 탈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책 이행 의지에 의구심이 들



심의를 참관하여 내용을 숙기 중인 필자 / 장애계연대 현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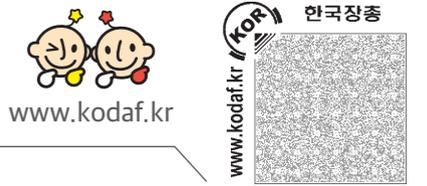
Cluster 3: 제21조~33조

세 번째 클러스터부터는 정부의 답변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함. 하여 정부 주요 보고 내용은 국가보고서만을 참고하여 작성함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제24조)

위원회 주요 질문

: 특수학교 증설 계획이 여전히 있으며, 일반학교 내에서도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에 배치되고 있음. 특수학교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원인을 보고하기 바람



정부 주요 보고

: 151.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일반 학교 특수학급, 완전통합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 옵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함

최종견해

: 50(a). 교육 요구 사항과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 된 인권기반 사정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 교사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접근가능한 보조기구, 학습자료,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것

- 협약은 제24조와 일반논평 4호를 통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완전한 통합 학교를 교육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정부는 장애학생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통합학교, 완전 통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지만, 이는 학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다양한 학생을 포괄하지 못하는 일반학교의 한계에 의한 조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제25조(e) 유보철회, 국내법 정비는 뒷전(제25조)

위원회 주요 질문

: 제25조(e)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내법은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보험 가입 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정부는 협약을 비준하던 2008년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가 제25조(e)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비준을 유보하였음. 2014년 1차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제25조(e)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차 최종견해 이후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정부는 두 번째 심의를 앞두고 7년 만에야 제25조(마)의 유보를 철회함. 하지만 전후에 국내법에 대한 조치는 전무함. 상법 제732조는 여전히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심신 박약자', '심신 상실자' 등 협약의 정신에 위반한 용어들을 써가며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함. 게다가 국가보고서는 상법 제732조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이다'라고 보고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차별을 정당한 보호 조치로 정당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 역시 협약에 대한 인식이나 이행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증거임. 정부는 차별적인 국내법을 폐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명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함



심의 후, 심의가 진행 된 회의장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장애계연대 / 장애계연대 현지 촬영

향후 장애계연대 활동 계획

정부의 UN 최종견해 이행, 끝까지 촉구 할 것

- 9월 9일 발표된 최종견해를 장애계연대는 공동으로 번역하여 공유하였음. 정부의 번역본도 꼼꼼히 살펴, 위원회의 의도를 올바르게 표현하였는지 검토할 계획임



- 이후 심의 파견 결과보고회를 진행하며, 장애계 연대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점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항별 최종견해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이행이 필요한 정부부처를 확인하고 이행 촉구 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 특히 다음 심의는 2031년 제4차-6차 병합심의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협약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국내에 홍보하는 일도 중요함
- 한국 정부가 걸만 그럴싸한 법과 제도들을 시행하며 협약을 이행하는 ‘척’을 멈추고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여 모니터링 할 것임



심의 종료 후, 유엔 광장에서 장애계연대 기념촬영 모습 / 장애계연대 현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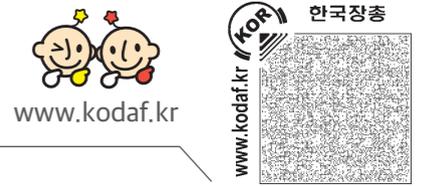
04 한국장애계의 Next Level은?

다양한 유엔 인권협약 심의 참여 필요

-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만 다루어져 하는 내용이 아님. 이미 1965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등 다양한 협약을 통해 장애인 권리 실태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에서는 장애인의 비자의입원, 시설 강제수용 등을 다룰 수 있고, 사회권 규약에서는 장애인의 교육, 고용 등의 실태 알릴 수 있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도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침해 상황을 전할 수 있음
- 각 조약별로 담당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관련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에 있어서 장애 주류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에 장애아동, 이주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참여 적극적 독려 필요

- 이번 심의연대에 자폐성장아동, 심리사회적장애인 등 소수장애인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으나, 장애아동이나 이주장애인 등 일부 소수장애인의 참여는 없었음
-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는 심의 중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향후 민간보고서 작성이나 모니터링 과정에도 장애아동 등이 직접, 자신이 경험하는 장벽을 알릴 수 있도록 장애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필요함



심의 대응 노하우 해외 장애인단체에 공유하는 주도적 역할 필요

- 한국정부는 185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 중 두 번째 심의를 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 협약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장애인단체임. 한국의 경우 1차에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 현장 로비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해외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심의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가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포럼(KDF)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ESTAS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두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장애인권법센터 / 장애인법연구회 / UNCRPD NGO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사회연구소 / 장애인인권센터 /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산재장애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연맹(DPI)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해냄복지회 / UNCRPD 이행연대]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022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

#축제의_장 #추억의_장 #성장하는_우리

기간 2022.10.24(월)~10.25(화)

장소 SK텔레콤 인재개발원

모집 2022.9.13(화)~9.23(금) 17:00

홈페이지 skkodaf.kr 신청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